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궁역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2022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기후예산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 관련 내용이 없고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예산서 작성시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후결산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

다(안 제5조제3항).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안 제5조제5항), 기후예산서의 내용 중 ‘효과분석’을 ‘감축목표’로, ‘기대효과’를 ‘효과분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이를 통해 기후예산서와 결산서가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어 작성되도록 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